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2014. 8. 7.)에 따른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규정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시민단체”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 명확히 규정(안 제12조)

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주소 기재방법을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도록 함(안 별지 제5호서식)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 2015. 11. ~ 2015. 12. ) 결과,
-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제4호 중 “시민단체”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③(생략)</p> <p>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2. (생략)</p> <p>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u>시민단체 대표</u>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4. (생략)</p> <p>⑤ ~ ⑩ (생략)</p>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③(현행과 같음)</p> <p>④ ----- ----- ----- --.</p> <p>1. 2. (생략)</p> <p>3. ----- --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u> ----- -----</p> <p>4. (현행과 같음)</p> <p>⑤ ~ ⑩ (생략)</p>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및 동(○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u>생년월일</u>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자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재외국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임을 기재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 관계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자치부장관(제62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